# 사 업 방 법 서 별 지

## 1. 보험종류의 명칭

종업원퇴직적립보험

## 2. 사업경영의 지역

이 보험의 사업경영 지역은 약관에 규정한 단체에 소속하여 장래 그 단체로부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가 생활하는 전 지역으로 한다.

## 3. 단체 및 피보험자의 범위

(1) 단체는 구성원 5인이상인 단체로서 피보험자 5인이상인 단체로 한다
(2) 피보험자는 이 보험에 가입한 단체에 소속한 자 중 그 단체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 및 퇴직금 규정에 따른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계약협정서 (이하 "협정서" 라 한다)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보험의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자로 한다.

## 4. 보험종류의 세목

이 보험의 종류는 계약단체별로 "갑종" 과 "을종" 을 두고 단체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갑 종

< 제 1종 단체 >
(가) 해산의 우려가 없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나) 공공기업체, 외국인 합작회사
(다) 종업원 1,000명 이상인 기업
(라) 자본금 10억 이상인 기업
(마) 한국은행, 단자회사의 적격업체

< 제 2종 단체 >
개인기업과 제 1종단체 이외의 단체

(2) 을 종
1997년 12월 1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 1항 및 제60조 제 2항의 해당단체

## 5.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정년퇴직시 까지로 한다.
그러나, 을종의 경우에는 협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이상의 일정기간으로 할 수도 있다.

## 6. 보험료의 납입주기

보험료의 납입주기는 연납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6개월납, 3개월납, 2개월납 또는 월납으로 할 수 있다.

## 7.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회사가 피보험자 1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는 단체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에 따라 협정서로서 정하고 재해보장보험가입금액은 최저 300만원부터 최고 500만원 범위내에서 각각 협정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 8. 피보험자의 선택

피보험자의 선택은 보험계약 청약서 및 단체로부터 통보되는 피보험자 명부에 의한다.

## 9. 보험계약의 체결

(1) 보험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 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체결한다.
(2)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대표자와 협의를 거쳐 회사와 약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다음 각호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약정하기 위하여 협정서를 작성 상호날인하며, 이는 약관의 일부를 구성한다.
    1. 계약협정의 목적
    2.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결정
    3. 보험료의 납입
    4. 사업비
    5. 보험금의 결정기준
    6. 책임준비금에 관한 사항
    7.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
    8. 기타 필요한 사항
(3) 협정서는 매년 정산일에 작성한다.

## 10. 보험금등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의 약관 및 협정서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 11. 해지

(1)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보험계약이 소멸하기전에 언제든지 장래에 향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사업장, 직제, 직종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 일부 피보험자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2000년 1월 1일 이후 협정서를 새로 체결한 단체의 경우 퇴직보험으로의 전환, 계약의 이전(종퇴보험 또는 퇴직보험) 사항 이외는 일부 해지를 할 수 없다.
(2) 피보험단체의 인원이 회사가 정한 수에 미달되고 다음 계약해당일까지 보충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 1항 및 제 2항의 경우 이 보험약관 및 협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4) 계약자는 이 보험에서 퇴직보험으로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약관 제12조(계약의 해지)에서 정하는 피보험자의 동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회사는 전환신청을 접수한 경우 퇴직보험 사업방법서에 따라 퇴직보험 계약으로 처리 한다.

## 12. 통합보험증권, 청약서 및 협정서의 서식

(1) 협정서의 서식은 별첨 제 1호의 서식으로 한다.
(2) 통합보험증권, 청약서의 서식은 별첨 제 2호의 서식으로 한다.

## 13. 약관대출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피보험자에 대한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될 수 없으므로 계약자에 대한 약관대출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 14. 보험계약의 변경

(1)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보험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제 2호 내지 제 3호를 변경할 경우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대표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보험료의 납입주기
2. 보험가입금액의 변경
3. 계약자
(2) 제 1항의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 협정서를 재작성할 수 있다.

## 15. 연령 및 근속년수의 계산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연령으로 계산하고 1 년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6 개월미만은 버리고 6 개월이상은 1 년으로 계산하며 근속년수의 계산은 계약단체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 16. 정상계약으로의 전환

계약자와의 협의에 따른다.

## 17. 부가하는 특약

회사는 필요한 경우 협정서에 정한 바에 따라 특약을 부가할 수 있다.

## 18. 경과조치

제 9조(보험계약의 체결) 제 2항, 제14조(보험계약의 변경) 제 1항의 '피보험자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해지) 제 1항 단서의 '일부해지 금지에 관한 사항'은 2000년 1월 1일 이후 협정서를 새로 체결한 단체부터 적용한다.